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 광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 | |
|---|---|
| 사 건 | 2018구단101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redacted] |
| 피 고 | [redacted]군수 |
| 변 론 종 결 | 2018. 10. 4.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토지에 관한 취득세 135,673,670원, 지방교육세 13,567,360원, 농어촌특별세 6,783,680원, 가산세 110,872,490원, 별지 2. 목록 토지에 관한 취득세 182,585,280원, 지방교육세 18,258,520원, 농어촌특별세 9,129,260원, 가산세 134,279,570원, 별지 3. 목록 토지에 관한 취득세 11,241,750원, 지방교육세 1,124,170원, 농어촌특별세 562,080원, 가산세 5,97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침 "폐광지역 2단계 투자방안 수립 ·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02. 11.)"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edacted]공단, 지방자치단체인 [redacted]군 및 [redacted] 랜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1) [redacted]군은 2011. 10. 25. 설립 중이던 가칭 주식회사 [redacted]리조트(2012. 1. 6. 법인 설립 후 2013. 2. 7. 원고의 현재 명칭 '주식회사 [redacted]순'으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출자한 현물에 대하여 1주당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 1,871,103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30.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10. 25. 현물출자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토지 취득에 관하여 2012. 1. 27. 피고에게 취득세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135,673,670원 등을 감면받았다.

다. (1) [redacted]군은 2012. 8.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출자한 현물에 대하여 1주당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 1,868,358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8.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8. 29. 현물출자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토지 취득에 관하여 2012. 10. 12. 피고에게 취득세신고를 하면서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182,585,280원 등을 감면받았다.

라. (1) [redacted]군은 2014. 3. 17. 원고와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출자한 현물에 대하여 1주당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 359,276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3. 17. 현물출자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토지 취득에 관하여 2014. 4. 25. 피고에게 취득세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11,241,750원 등을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 의하여, 2017.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토지에 관한 취득세 135,673,670원, 지방교육세 13,567,360원, 농어촌특별세 6,783,680원, 가산세 110,872,490원, 별지 2. 목록 토지에 관한 취득세 182,585,280원, 지방교육세 18,258,520원, 농어촌특별세 9,129,260원, 가산세 134,279,570원, 별지 3. 목록 토지에 관한 취득세 11,241,750원, 지방교육세 1,124,170원, 농어촌특별세 562,080원, 가산세 5,971,600원의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31.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징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위 추징예고통지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에 관하여

원고가 [redacted]군의 지역경제회생 및 대체산업 개발·육성이라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나간 점, 본 사업의 성격과 규모,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감안할 때 유예기간 1년 안에 착공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본 사업의 성패가 [redacted]군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여러 번 검토를 걸쳐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는 사업계획 확정·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부터 세부 절차 진행까지 모두 주주이자 이사인 화순군 결정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원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또한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사 취득세등의 추징이 적법하다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 ·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2012. 4. 18.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012. 4. 25. 및 2012. 8. 16. 현황측량 용역

2012. 9. 25. 건설사업관리(CM형 관리) 용역

2013. 2. ~ 2013. 7. 도곡온천관광지 확대지정, 조성계획 변경 승인

2013. 4. 19. 관광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및 용역계약

2013. 12. 30. 관광개발사업의 지반조사 용역

2014. 5. 3.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제기(운영사항 점검)

2014. 11. 6. 관광개발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

2016. 10. 11. 기본구상(아이템 발굴) 및 타당성분석 용역

2017. 1. 19. 신규아이템 용역수행결과에 따라 원고의 사업계획을 직업체험 테마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크로 변경

2017. 7. 7. 직업체험 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 · 실시계약 제안 공모

2017. 9. 21. 직업체험관 체험전시 설계 및 제작 · 설치 용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1, 13. 16. 22. 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제94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제17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당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0, 15, 16, 19, 21, 2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2. 4. 18. 주식회사 [redacted]화와 사이에 위치를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일대, 부지면적 153,976.8㎡를 대상으로 하는 '[redacted]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지면적 153,976.8㎡는 원고가 [redacted]군으로부터 2011. 10. 25. 1차로 출자받은 [redacted]리 [redacted] 대 10,996.6㎡ 외 1필지 합계 34,251.8㎡와 2012. 8. 29. 2차로 출자받은 [redacted]리 [redacted] 답 115㎡ 외 59필지 합계 119,725㎡를 합한 면적인 사실, 원고가 2012. 4. 25. 주식회사 [redacted]G와 사이에 위치를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 [redacted] 일대 부지면적 40,382㎡를 대상으로 하는 '[redacted]리조트 관광개발사업(1공구) 현황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지면적 40,382㎡은 원고가 2011. 10. 25. 1차로 출자받은 [redacted]리 [redacted] 대 10,996.6㎡ 외 1필지 합계 34,251.8㎡와 2014. 3. 17. 3차로 출자받은 [redacted]리 [redacted] 대 6,131㎡를 합한 면적인 사실, 원고가 2012. 8. 16. 주식회사 [redacted]링과 사이에 위치를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답 등 60필지 부지면적 119,725㎡를 대상으로 하는 '[redacted]리조트 현황측량 용역'에 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지면적 119,725㎡는 원고가 위 기술계약체결일 이후 2012. 8. 29. 2차로 출자받은 토지인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redacted]군이 2011. 10. 25. 원고와 1차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2차, 3차로 출자할 예정이던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확정된 상태였고, 원고는 [redacted]군으로부터 2차, 3차로 출자받게 될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redacted]군수가 원고의 2012. 8. 29.자 제6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redacted]군의 2차 현물출자시기 및 출자총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2013. 9. 12.자 이사회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redacted]군이 원고와 사이에 1차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2차, 3차로 출자할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redacted]군수가 원고의 2012. 8. 29.자 제6자 이사회에 원고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redacted]군의 2차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신주인수자를 [redacted]군으로 하는 신주발행에 동의한 것이고, 원고의 이사 자격에서 2013. 9. 12.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 원고는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사업성 재검토 및 수익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성이 없을 경우 신규사업의 아이템을 찾아보라는 정부부처 또는 주주단의 요구가 원고의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되게 된 사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redacted]공단, 정부부처 공기업인 [redacted]랜드, 지방자치단체인 [redacted]군의 자금이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원고가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에 관하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redacted]군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부부처 또는 자금 및 현물을 출자한 주주단에게 원고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redacted]공단, [redacted]랜드, [redacted]군은 원고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자금이나 토지를 출자한 주주로서 원고에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수익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성이 없을 경우 신규사업 아이템을 강구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사업타당성 검토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발주 여부, 사업계획 변경여부 등은 최종적으로 원고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가 2014. 9. 19.자 제22차 이사회결의(갑 제15호증), 2016. 3. 15. (13:00)자 제27차 이사회결의(갑 제19호증의 1), 2015. 3. 16. (14:00)자 제28차 이사회결의(갑 제19호증의 2)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계획확정에많은 시일이 소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 추진내용에 의하면(갑 제10, 16, 21 내지 23, 30, 32호증), 당초 계획했던 화순리조트 관광개발사업을 철회하고 2013. 9.경 사업계획을 발효 관련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위 발효관련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다는 민원제기 및 정부부처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지시에 따라 2014. 11.경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요역을 시행하였으며 2015. 3.경 원고가 계획했던 리조트사업이나 발효 관련사업이 모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직업체험 테마파크 사업이 제시되자 원고의 사업계획을 발효 관련사업에서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변경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이 거듭 변경되고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새롭게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인바, 사업계획추진이 지연된 주된 원인은 거듭된 사업계획변경에 있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에 수반되는 의견수렴절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에 더하여 원고는 [redacted]군이 1차로 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1. 30. 이후 무려 6년이 넘는 시일이 경과하도록 취득당시의 상태 그대로 이 사건 토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들을 해당 용도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현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한 것이 원고의 사업계획추진이 지연된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원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또한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별지 1.

## 토지 목록

1. [redacted]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대 10996.6㎡
2. [redacted]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대 23255.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별지 2.

# 토지 목록

| | | | | | | | | |
|---|---|---|---|---|---|---|---|---|
| 1. | [redacted] | 남도 | [redacted] | 군 | [redacted] | 면 | [redacted] | 리 [redacted] 답 115㎡ |
| 2.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511㎡ |
| 3.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764㎡ |
| 4.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387㎡ |
| 5.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임야 109㎡ |
| 6.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509㎡ |
| 7.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946㎡ |
| 8.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1159㎡ |
| 9.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임야 397㎡ |
| 10. | [redacted] | 남도 | [redacted] | 군 | [redacted] | 면 | [redacted] | 리 [redacted] 전 1517㎡ |
| 11.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952㎡ |
| 12.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704㎡ |
| 13.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483㎡ |
| 14.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605㎡ |
| 15.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1752㎡ |
| 16.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1058㎡ |
| 17.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1382㎡ |
| 18.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569㎡ |
| 19.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전 235㎡ |
| 20.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116㎡ |
| 21. | | 남도 | | 군 | | 면 | | 리 [redacted] 답 48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22.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331㎡
23.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678㎡
24.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922㎡
25.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238㎡
26.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595㎡
27.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797㎡
28.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546㎡
29.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506㎡
30.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198㎡
31.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지 132㎡
32.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3243㎡
33.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393㎡
34.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850㎡
35.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764㎡
36.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전 15㎡
37.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전 334㎡
38.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임야 202㎡
39.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답 663㎡
40.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답 868㎡
41.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답 330㎡
42.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전 1729㎡
43.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임야 357㎡
44.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임야 2317㎡
45. [redacted]남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임야 495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46.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331㎡
47.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5157㎡
48.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7280㎡
49.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1920㎡
50.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1742㎡
51.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101㎡
52.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32060㎡
53.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51㎡
54.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대지 694㎡
55.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9980㎡
56.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1289㎡
57.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1652㎡
58.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3306㎡
59.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16590㎡
60. [redacted] 남도 [redacted] 군 [redacted] 면 [redacted] 리 [redacted] 임야 8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별지 3.

## 토지 목록

1. [redacted]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대 613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별지 4.

#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6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